

 금융위원회	<b>보도참고자료</b>			 금융감독원
	<b>보도</b>	<b>배포 후 즉시</b>	배포	

<b>책임자</b>	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고상범(02-2100-2660)	<b>담당자</b>	노소영 사무관 (02-2100-2662)
	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 이경식(02-3145-6700)		이종기 팀장 (02-3145-6711)

## 제 목 : 신영알이티(주), 한국투자부동산(주) 부동산신탁업 본인가

- 금융위원회는 '19.10.23(수)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신영알이티(주)\* 및 한국투자부동산(주)\*\*의 부동산신탁업을 본인가함

\* 최대주주 : 신영증권, 인가 후 신영부동산신탁(주)으로 상호변경 예정

\*\* 최대주주 : 한국투자금융지주, 인가 후 한국투자부동산신탁(주)으로 상호변경 예정

- 금번 인가시 금융위원회는 “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인가 2년 후\* 부터 영위할 것”을 조건으로 부과하였음

\* 단,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되어 있는 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업무를 일정기간 동안 추가 제한

- 금번 인가는 '18.10월 발표한 「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」에 따른 것으로,

- '19.3.3일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 중, 이미 본인가('19.7.24일)를 받은 대신자산신탁(주)을 제외한 2개사에 대해 본인가를 의결한 것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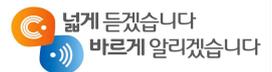
### < 그간의 경과 >

- ▶ '18.10.24일, 「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」 발표
- ▶ '18.11.26~27일 예비인가 신청접수 결과, 총 12개 신청자가 신청서 제출
- ▶ '19.3.3일 증선위·금융위에서 총 3개사((가칭)신영자산신탁, (가칭)한투부동산신탁, (가칭)대신자산신탁)에 대해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의결
- ▶ '19.7.24일 대신자산신탁(주)에 대한 부동산신탁업 본인가 의결
- ▶ '19.8.23일 신영알이티(주) 및 한국투자부동산(주)의 본인가 신청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  
 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